

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·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회의(97. 5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 김진수)

가. 제안이유

- 93. 12. 27.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인 제31조가 삭제되었고 95. 1. 5. 먹는물 관리법의 제정으로 공동급수시설이 먹는물공동시설로 규정되어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
- 현재 먹는물관리법의 작용을 받는 공동우물의 이용자는 80명 정도이나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동조례 폐지

3. 질의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·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257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폐지이유

- 93. 12. 27.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인 제31조가 삭제되고 95. 1. 5.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공동급수시설이 먹는물공동시설로 규정되어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.
- 현재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우물의 이용자는 소사구, 오정구에 걸쳐 80인 정도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.

2. 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3. 관계법령 발췌서

-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·관리조례
- 공중위생법 제31조
- 먹는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

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·관리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·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